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42

발의연월일: 2022. 8. 2.

발 의 자:주호영·강대식·강민국

구자근 • 권명호 • 권성동

권은희 • 권칠승 • 김기현

김병기・金炳旭・김상훈
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성원

김승수 · 김영식 · 김영진

김예지 · 김용판 · 김정재

김태년 · 김태호 · 김학용

김형동 · 김회재 · 김희국

류성걸 • 박대수 • 박덕흠

박성민 • 박정하 • 박형수

배현진 · 서정숙 · 소병철

송석준 · 송언석 · 신원식

안규백 • 안철수 • 양금희

엄태영 • 유경준 • 유상범

유의동 • 윤두현 • 윤상현

윤재옥 • 윤주경 • 윤창현

이만희 • 이병훈 • 이양수

이 용ㆍ이용호ㆍ이인선

이종성 · 이철규 · 임병헌

임이자 · 장동혁 · 전주혜

정운천 · 정찬민 · 정희용

조명희·조은희·조해진 주철현·지성호·최승재 최연숙·최영희·최재형 최춘식·최형두·태영호 하영제·한기호·한무경 허은아·홍석준 의원 (83인)

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·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·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 야 함.

나아가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·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 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,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,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,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, 개발 절차, 지원사업, 소요 재원의 조달, 국가의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,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물류·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 · 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(안 제3조).
- 다.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, 기부·양여 재산의 평가,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,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.
- 라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 특구,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, 경제자유구역, 연구

개발특구, 특별건축구역,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25조).

- 마.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·도로 등 교통시설, 신도시 조성,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,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 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(안 제27조).
- 바.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 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 행자에게 조세감면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,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8조부터 제44조의2까지).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 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물 류·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 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통합신공항"이란 K-2 대구 군 공항 및 대구 국제공항을 이전하고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.
- "통합신공항 건설사업"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 전사업 및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
 - 나.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 도·도로 등의 건설,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·항공화물유통시설·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

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

- 다.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 시설 등의 조성
- 라.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기반시설 건설
- 3. "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"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- 4. "종전부지"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.
- 5. "종전부지 주변지역"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- 6. "종전부지 개발사업"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국제규모의 관광·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 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7. "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"이란 통합신공항이 이전하고 건설되는 군위·의성군 지역(이하 "이전주변지역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8. "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"이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

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- 제3조(기본방향)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.
 - 1.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의 복합공항
 - 2.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중 추공항, 지방중심의 내륙공항 등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 시·경상북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통합신공항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
 - 3. 중·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·비행장 규모
 - 4.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
 - 5.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국제규모의 관광·상업·첨단산업 도시 조 성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 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항시설법」 제9조부터 제22조까지, 제24조,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항개발사업"은 "통합신공항 건설사업"으로 본다.
- 제6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 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에 우선한다. 다만,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 합계획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보호구 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

- 제7조(군 공항 이전) K-2 대구 군 공항(이하 "군 공항"이라 한다) 이 전절차는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방·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8조(민간공항 이전) 공항개발사업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다.

- 제9조(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) ① 군 공항 대체시설로 기부하는 재산과 용도 폐지 후 양여하는 재산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및 방법, 평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의 시설규모를 고려한 이전시설의 소요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,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(이하 "이전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.
 - 1.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- 2.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
 - 3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 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
 -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제11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 ① 군 공항 이전주 변지역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.
 - 1.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

- 2. 중앙행정기관의 장
- 3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
- ② 제13조제1항의 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. 이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지방교부 세의 특별지원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금 지 급대상사업의 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3조제1항의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주변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,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기본계획의 수립)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는 「공항시설법」 규정을 따른다.
- 제13조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)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 업에 대하여는 종전부지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

- 의 시행을 위임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- 제14조(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)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은 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·승인에 관한 절차는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.
 - ②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.
 - ③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,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·군사 시설사업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.
- 제15조(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국방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 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·허가·인가·결정·지정·면허·협의·동의·심의 또는 해제 및

계획의 수립·변경 등(이하 "인·허가 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국방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6호의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·군사시설사 업에 한정한다.

-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2.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- 4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·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·협의
- 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- 6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
- 7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- 8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
- 9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0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·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
- 11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
- 12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
- 13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- 14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
- 15. 「수도법」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
- 16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
- 1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
- 18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- 19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
- 20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

- 21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- 22.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
- ② 국방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④ 제13조에 따른 시행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·허가 등을받은 것으로 보고, 제13조에 따른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장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
- 2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19조

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,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, 같은 법 제2 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

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4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- 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점용·사용 허가의 고시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법 제33조에 따른매립면허의 고시, 같은법 제35조에 따른매립면허관청과의협의 또는매립면허관청의 승인및 같은법 제38조에 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8 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고시
- 7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
- 8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
-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및 「소음 •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10. 「도로법」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1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
- 1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
- 13.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
- 14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방지(砂防地)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5. 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・해제
- 16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 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·신고
- 1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

- 18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
- 19.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,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
- 20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
- 2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- 22.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2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
- 24. 「자연공원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(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2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
- 26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(草地轉用)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
- 27. 「페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의

승인 또는 신고

- 28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·유지의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
- 29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⑤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16조(부대공사의 시행) ① 제13조에 따른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 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(이하 이 조에서 "부대공사"라 한다)는 이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

- 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.
- ②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,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 발사업의 실시, 비용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18조(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)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기관 · 법인 · 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공항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기구) 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 전주변지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 업과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

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

- 제20조(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)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.
- 제21조(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22조(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) ①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(이하 "개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구수용계획

- 2. 토지이용계획
- 3.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
- 4. 교통처리계획
- 5. 도시문화계획
- 6. 경관계획
- 7. 환경보전계획
- 8. 교육·문화시설 및 보건의료·복지시설의 설치계획
- 9. 도로,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- 10.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
- 1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
- 12. 재원조달계획
- 13. 종전부지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
- 14.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
- 1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) ①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22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·고시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역
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,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 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(이하 "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-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.
-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 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.
- ④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 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이를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 따라 고시된 사항 중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·지구 등으로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 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24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23조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결정·신고·지정·면허·협의·해제·심사 등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해당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.

- 1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·축조신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
- 2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- 3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허가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
- 4.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,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
- 5. 「광업법」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
- 6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 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
- 7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- 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・군관

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, 같은 법 제8 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
- 9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 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 에 관한 협의
- 10. 「낙농진흥법」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
- 11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
- 12. 「농지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·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·협의
- 1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14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15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 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

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)

- 16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(私道) 개설허가
- 17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8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서의 행위의 허가·신고,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,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・벌채 등의 신고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·신고
- 19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,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・일반산업단지개발・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
- 20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
- 21.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, 같은 법

-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
- 22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
- 23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,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24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
- 25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혐의
- 2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
- 27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- 28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29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
- 30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

- 른 사업의 착수 · 변경 및 완료의 신고
- 3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
- 32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
- 33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- 3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
- 35. 「하수도법」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(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) 설치의 인가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
- 36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
- 37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- 38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
- 39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 록

- ②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인·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23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·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, 수수료·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- 제25조(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.
 - 1.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
 - 2.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
 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 -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 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

- 5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
- 6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26조(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) ① 전기·통신·가스,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「도시개발법」 제55조를 준용 한다.
 - ②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(주변지역을 포함한다) 등에 필요한 도로,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③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·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⑥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

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

- 제27조(정부의 재정 지원) ①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 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경우 제2조제2호와 제6호의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 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 및 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. 이 경우 「국방・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국방・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제28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에 대하여「조세특례제한법」,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「농어

- 촌특별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 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,「농지법」,「초지법」,「산지관리법」,「하천법」,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」,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및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・사용료, 하천 점용료・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9조(민간자본 유치) 제13조 및 제21조의 시행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- 제30조(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)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
- 2.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
- 3.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31조(지역기업의 우대)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수 있다.
- 제32조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33조(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) 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

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 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 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34조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35조(토지·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)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 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교육기관,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, 제4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,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

-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.
- 제36조(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일부를 특 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건축법」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7조(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산림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예 정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6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제3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후 지역·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「토지이용규제

기본법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제39조(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) 제13조에 따른 시행자 및 공항 운영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.
- 제40조(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"입주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,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(이하 "기업 등"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

있다.

- ⑤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・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- 제41조(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 입주외국인투자기업(산업·연구, 관광·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
 - 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 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
 - 4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-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제42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

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3조(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4조(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「관세법」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4조의2(광역교통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특례) 통합신공항의 이용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역철도에 대하여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비용 분담을 상향할 수 있으며, 운영비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- 제45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.
- 제46조(감독) ①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·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·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
 - 2.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- ②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47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